#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08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 : 한준호·강민정·김성환

김원이 • 박홍근 • 서동용

오영환 • 윤준병 • 이수진

이용빈 · 이정문 · 임오경

정필모 · 홍익표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 월성3호기 터빈갤러리, 관측공 등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규제기 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장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또한 2021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에 대해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현행법상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부적합사항 보고 조항에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상의 사고관리설비로 인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및 제92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련설비"를 "안전관련설비 및 제 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고관리계획서의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 비(이하 "사고관리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9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3호에 따라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 그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련설비 및 제20조 자는 안전관련설비에서 제11조 |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고관 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리계획서의 사고관리에 필요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설비(이하 "사고관리설비"라 한 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다)-----하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1조 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 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3 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3 호에 따라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할 때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